

학교생활인권규정

2010년 05월 01일	제정
2011년 03월 01일	개정
2012년 03월 01일	개정
2013년 03월 01일	개정
2014년 03월 01일	개정
2016년 07월 04일	개정
2016년 08월 31일	개정
2017년 10월 12일	개정
2018년 12월 24일	개정
2019년 11월 01일	개정
2022년 02월 17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함현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밝고 건전하게 지도하여 학생들이 배움의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는 학습풍토를 조성하고, 바람직한 학교생활과 질서를 지키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덕성을 갖추게 한다.

제3조【적용근거 및 학생 준수 사항】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준수사항을 정한다.

1. 교칙을 준수하고, 자치 질서를 확립하여 민주적인 공동체를 형성한다.
2.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며 고운 말을 사용한다.
3. 항상 용의는 단정하며 학생의 신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학교의 모든 시설과 환경을 아끼고 가꾸는 마음을 갖는다.

제4조【학생의 권리 보장원칙】

- ①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 ③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이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책무】

- 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환경의 개선】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교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7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0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1조【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①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②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③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2490 -217)
- ④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 ⑤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 ⑥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⑦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 ⑧ 학교폭력 117

3. 피해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12조【의사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학생전용게시판은 4층 학생자치회실 게시판을 사용한다.
5.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13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제14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다목적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6조【주변활동】주변 활동은 학급 규칙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활동에 관련된 사항

은 학급 내규에 따른다.

제17조【기타 교내생활】

1.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사제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2. 기타 사항

- ① 등교 시간은 09:00까지로 한다.
- ② 복도 통행 중 큰소리나 소란을 삼가고, 실내정숙에 힘쓴다.
- ③ 선생님이나 외부 손님을 만났을 경우에는 목례로 인사를 한다.
- ④ 등하교 시는 실외화를 착용한다.
- 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외출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무단외출은 금한다.
- ⑥ 결석 시에는 신속히 결석의 사유를 전화로 알리고,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절 교외생활

제19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 9. 원동기 및 모터사이클의 탑승을 금한다.
- 10.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나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20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용의복장

제21조 【복장】

1.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생활복)으로 구분하며 단정하게 입는다.
 - ② 동절기에는 셔츠안의 폴라티를 허용하며, 패딩이나 코트 등의 방한 의류를 입을 수 있다.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 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③ 학생은 교복 치마와 바지의 구매나 착용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학습 등에 편안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생활복, 반바지, 후드, 폴라티 등) 범위 내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는다.
 - ⑤ 동절기에는 교복 자켓을 벗고 외투를 입을 수 있다.
2. 학교마크(교표)는 교복에 부착하고, 명찰은 학년마다 색깔을 달리하여 학년 표시를 하도록 하고, 학교마크는 상의 좌측 윗주머니 중앙에, 명찰은 학교 내에서만 상의 좌측 윗주머니 위에 탈부착으로 달아야 한다.

2022학년도 함현중학교 교복 디자인 및 사양서

1)섬유 혼용률

구분		섬유 혼용률	비고
하복	생활복(남, 여)	폴리에스테르 100%	곤색, 3버튼 폴로 T카라
	상의(남, 여 셔츠)	폴리에스테르 75%+레이온 25%	흰색
	하의(남, 여 스커트, 긴바지, 반바지)	울 50%+폴리에스테르 50%	곤색
춘추복	상의(남-셔츠, 여-블라우스)	폴리에스테르 65%+레이온 35%	회색
	조끼(남, 여)-니트	울 50%+아크릴 50%	v형 네크라인, 곤색
동복	상의(남, 여 자켓, 후드집업)	울 60%+폴리에스테르 40%	자켓 : 곤색, 싱글 3버튼 테일러드카라 후드집업 : 곤색, 지퍼, 손목 및 허리 시보리, 기모 안감
	하의(남, 여 스커트, 바지)	울 60%+폴리에스테르 40%	곤색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특정 표식 및 문양 없음

하복 리본, 춘추복 넥타이	울 50+폴리에스테르 50%	여학생스커트원단(남녀공용)
체육복	동복	면 60+폴리에스테르 40%
	하복	면 50+폴리에스테르 50%
		학년별 색상 다름 상,하의 혼용률 동일

※ 섬유 혼용률 등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임

2)제작 시 유의사항

<상의>

- ①길이-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춘추복,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조끼(여)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 후드집업 : 엉덩이 둘레선까지
- ②품-단추를 채우고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스커트>

- ①길이-무릎 선 부분(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2018학년도 스커트 길이보다 4cm 길게 제작.
- ②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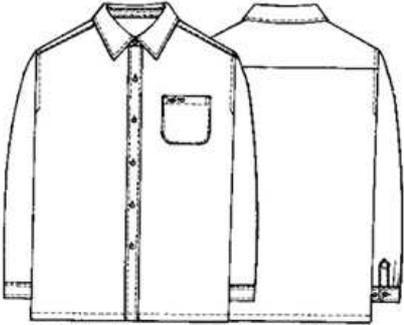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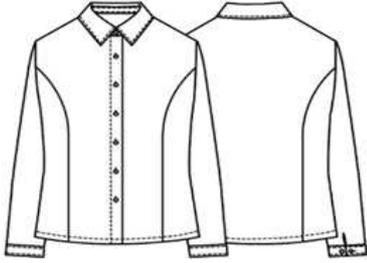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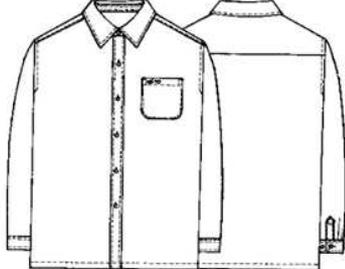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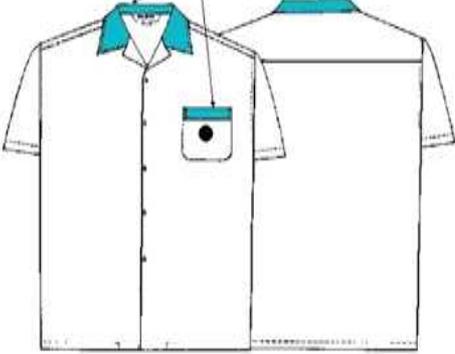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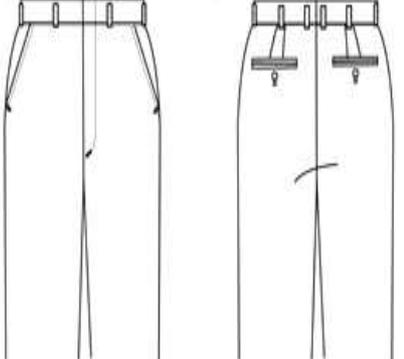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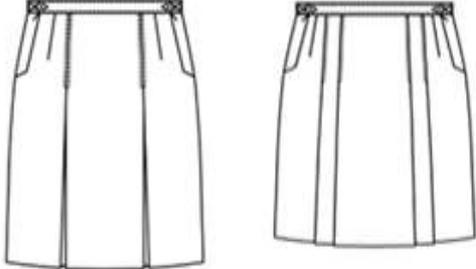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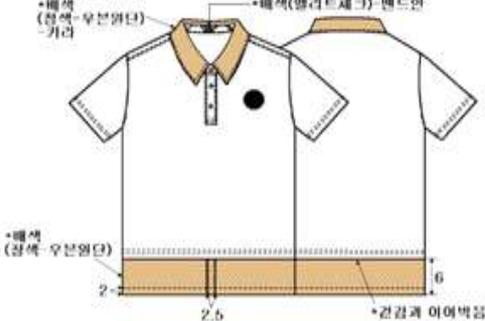
- ①길이- 동복, 하복 긴바지 :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 하복 반바지 : 무릎선 부분의 길이(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 ②바지통- 7½~8인치정도

<기타>

- ①동복 자켓, 조끼, 하복 상의, 생활복의 윗부분에 학년별 색상 구분하여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단, 교외에서는 주머니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들 것)
- ②치마, 바지, 조끼 안쪽, 체육복 상, 하의 적당한 곳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 ③후드 집업의 경우 끈 조절기능 없어야 함

3)디자인, 색상

	남	여	기타
자켓			곤색스판 원단 

<p>셔츠</p>		 	<p>남여 : 회색 셔츠 흰색 단추</p> <p>여 : 허리 라인이 있는 셔츠와 허리 라인이 없는 셔츠 중 선택하여 착용함.</p>
<p>하복상의</p>		<p>DESIG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7mm 폭 끈배색(스커트원단-진곤색) *스트랩타이 (스커트원단-진곤색) *2mm 피어싱 배색 (스커트원단-진곤색) *7mm 폭 배색 (스커트원단-진곤색) 	 <p>흰색 스판원단, 흰색 단추</p>
<p>바지 및 스커트</p>		 <p><동복 스커트> <하복 스커트></p>	<p>곤색스판 원단, NO-TUCK 바지 바지와 치마 양쪽허리 조절단추</p>
<p>조끼 및 생활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색 (갈색-우븐원단) -키라 *배색 (베이지트레드) -밴드안 *배색 (갈색-우븐원단) *견갑과 이어백길 	  <p>곤색원단</p>

후 니 겐		 곤색원단 지퍼
-------	---	---

<교복 착용 컷>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정복		
추추복		

하복/
생활복



제22조 【교복착용시기】 교복은 착용 시기는 자율적으로 정하며, 학교에서 정한 교복을 착용한다.

제23조 【두발】

1. 머리의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파마·염색·탈색 사용 등의 변형을 허용하지 않는다.
2. 특별한 경우의 학생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 【신발】편리하고 활동하기 좋은 신발(운동화)을 신으며 다음은 규제한다.

1. 하이힐, 부츠, 사치성 구두, 바닥이 높은 구두, 앞이 튀어나온 구두, 샌들
2. 실내화는 슬리퍼 및 끈이 없는 운동화만 허용한다.

제25조 【책가방】

1. 학생용 가방을 원칙으로 하되, 등에 메는 것이어야 한다.
2. 학업 상 필요한 보조 가방은 허용한다.
3. 책가방을 소지한다.

제26조 【소지품 및 장신구】학생으로서 학습활동에 필요한 물품 외에는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1.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는 교사는 대상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학생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생활지도 관련 부장의 입회 아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지품 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즉시 학교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4. 학생이 모든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던 교사는 소지품 검사 실시의 사유 및 세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필요한 학생생활교육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 【기타】

1. 학생 신분에 어긋난 화장을 금지한다.
 - ① 매니큐어
 - ② 써클렌즈
2. 학교에서 지정한 것 이외의 부착물을 달지 않는다.(단 학교배지, 명찰은 학교에서 꼭 착용한다.)
 - ① 배지: 왼쪽 옷 깃(동복 착용 시), 가슴 상단(하복이나 춘추복 착용 시)
 - ② 명찰: 왼쪽 가슴 부착(주머니 입구 밖으로)
3. 수업 중 학습활동에 불필요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는다.(예 : 빗, 거울, 핸드폰 등)
4. 귀걸이는 링모양의 귀걸이와 같은 늘어지는 형태의 위험한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4절 정보통신

제28조【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본인 정보에 대해 언제든지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교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며,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개정 즉시 개정사항을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한다.

제29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0조 【휴대전화 사용규정】

1. 휴대전화란 이동통신에 의해 무선으로 연결되는 휴대전화로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이다.
2. 학생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도 대책을 수립하여, 건전한 학교생활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학생 등교 시 휴대전화의 교내 소지 가능 여부 및 사용 시간 등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학교 사정에 적합한 규정을 정하고,

이 규정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결정된 규정은 가정통신문이나 학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4. 면학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휴대전화 사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정을 둔다.
 - ① 학교에서 조례 및 종례 그리고 수업 중에 휴대전화기 사용을 금지한다.
 - ② 학생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할 수 있으나 올바른 면학 분위기를 위하여 등교 즉시 휴대전화기 전원을 끄고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보관한다.
 - ③ 휴대전화기 필요할 경우에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종례 시에 휴대전화를 반납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④ 교내 . 외에서 교권 및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 ⑤ 휴대전화의 사용금지 시간에 사용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한다.
 - ⑥ 휴대전화의 사용금지 시간에 사용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적발이 되면 회복적 생활 지도 규정에 따라 지도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5.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교내에서 분실 시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한 학생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6. 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전문가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확정한다.

제5절 학생자치회

제31조【회원】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2조【권리 및 의무】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2.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3.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동아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5.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6.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금지활동】학생자치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34조【활동】학생자치회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의 활동

- ① 학생자치회 조직, 임선 선출.운영
- ② 학교생활 주요과제, 공동 관심사 협의.계획
- ③ 생활 반성, 학급.클럽활동에 대한 의견 교환
- ④ 학교 단위의 행사 계획 수립

2. 위원 활동

- ① 위원회별 구체적인 활동계획 및 평가
- ② 학교생활 규칙 실천 활동
- ③ 행사 운영, 봉사 및 체험.지원활동, 학생 복지 증진활동

3. 기타 행사 활동

- ①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위한 제반 의식 행사 활동
- ②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③ 학교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제35조【승인】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6조【학생자치회 임원】학생자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자치회 회장 1인(3학년), 부회장 2인 (3학년 1인, 2학년 1인)을 전교생이 11월 중에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2. 각부의 부장 1인, 서기 1인(3학년), 차장 1인(2학년)은 3월중에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지도교사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37조【부서】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1. 봉사부 : 각 종 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 2. 학습부 : 학.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4. 생활기획부 : 바른 언어생활 준수 및 학급평화 규칙 홍보 활동 및 학교행사활동 기획
- 5. 환경미화부 : 학교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 6. 도서부 : 학급 도서 및 도서실의 도서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제38조【직무 및 선출】

- 1.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자치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각 부서의 장은 회장과 부회장이 추천하여 지도교사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39조【임원의 자격】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①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②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 ③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④ 임원은 **선출 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은 내력이 있는 경우라도 개선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안전생활부의 심의를 받아 등록한다.(단, **선출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은 학생의 경우 그 자격은 박탈되며, 박탈된 경우 2주일 이내 새 임원을 선출한다. 박탈된 임원의 임기기간은 인정한다.)

제40조【임기】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전출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의 결원이 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잔여기간동안 재임한다.

제41조【기구】 학생자치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회를 둔다.

제42조【효력 정지】

- 1. 학생자치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 2. 학생자치회 의결사항이 교칙에 위배 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제43조【대의원회】 학생자치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성

- ①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의 상설 의결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학생자치회 회장은 대의원회를 주관하고 반장은 학급회를 관장한다.

2. 기능

- ① 사업계획 보고의 심의 및 결과보고의 승인
- ② 학생자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 수렴 및 전달
- ④ 학생자치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 ⑤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 ①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③ 대의원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④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4조【운영위원회】

1.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2. 기능
 - ①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② 사업계획
 - ③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④ 기타 중요한 의안
3. 회의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학생안전생활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4. 부서 조직
 - ① 학습부 : 학.예술 및 교양, 취미, 오락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 ② 체육부 : 학생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 ③ 봉사부 : 각종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④ 환경미화부 : 학교내외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 ⑤ 도서부 : 학급도서 및 도서실의 도서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 ⑥ 생활기획부 : 학내 질서 및 교풍확립과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제6절 학급자치회

제45조【목적】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명칭】본회는 함현중학교 학급자치회라 칭한다.

제47조【회원】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해당 학급 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이거나 전출할 경우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48조【권리, 의무】본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9조【지도기구】본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담임교사를 고문으로 한다.

제50조【기능】본회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51조【임원】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및 서기 1인
4. 각부의 부장 1인

제52조【부서】본회는 다음 각 부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학습부 : 학, 예술 및 교양, 취미, 오락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2.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3. 생활기획부 : 학급 제반 사업 계획 및 문서 관리 등
4. 봉사부 : 각종 봉사활동, 각종 도우미 및 안전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
5. 환경미화부 : 교실 환경정리 및 학급행사, 홍보물 제작, 미화 활동에 관한 사항
6. 도서부 : 학급 도서 정리 및 관리, 그리고 도서에 관한 사항

제53조【임원의 의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의장으로서 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기획 및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
4. 서기는 기록을 담당한다.
5. 부장은 소속부의 임무를 총괄하며, 부원은 부장과의 협조 하에 학급일을 수행한다.

제54조【임원 선출 및 자격】

1. 회장, 부회장은 학급회에서 선출하고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2. 회장, 부회장은 학급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 학기 초에 선출한다.
3. 제2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학급회의 제적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는 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입후보자가 1인 일 때는 그 득표수가 회원 총수의 1/3 이상이 아니면 회장, 부회장으로 당선될 수 없다.
5. 각 부의 부장은 학급회에서 추천을 받아 **학년 초에** 선출하며, 담임교사의 심사를 거친 후 임명한다.
6.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① 공고일 현재 학급에 재학 중인 자
 - ②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 ③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④ 임원은 **선출 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은 내력이 있는 경우라도 개선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안전생활부의 심의를 받아 등록한다.(단, **선출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은 학생의 경우 그 자격은 박탈되며, 박탈된 경우 2주일 이내 새 임원을 선출한다. 박탈된 임원의 임기기간은 인정한다.)

제55조【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기로 한다. 단, 임기 중이라도 전출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될 때는 1주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56조【회의】

1. 학급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2. 정기회는 매주 학급회 시간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학급 인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학급회 의결은 학급 인원 4/5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학생자치회 선거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함현중학교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올바르게 전교 학생자치회의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전교학생자치회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 ① 회 장 1인 (당해 2학년 1인)
- ② 부회장 2인 (당해 2학년 1인, 1학년 1인)

제3조 【선거】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는 매년 11월 중에 실시하며 선거일은 선거일전 2주전 까지 학교장이 공고한다.
- 2.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한다.
- 3. 본교 재학생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공고일 현재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 4. 후보자가 1인인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5. 직선이 불가능한 경우
 - ① 천재지변, 전시에 준하는 사항
 - ② 입후보자가 없을 때는 학생부장이 후보자를 선정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 2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구성】

- 1.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대의원으로 하되,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현 학생자치회장이 된다.
 - ② 선거관리위원은 정·부회장의 입후보 및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 3.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선거업무가 끝날 때까지이다.

제5조【공고】선거일은 2주전에 공고한다.

제6조【선거인 명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명렬표로 대체)

제7조【후보자 등록】

- 1.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결정하여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한다.

- ① 2학년 : 정회장 1명 단독후보, 부회장 1명 단독후보 / 1학년 : 부회장 1명 단독후보
 - ② 2학년 : 정·부회장 1명 단독후보(최다 득표 후보:회장, 차점 후보:부회장) / 1학년 : 부회장 1명 단독후보
 - ③ 2학년 : 2명 공동후보(정·부회장 각 1명) / 1학년 : 1명 단독후보
2. 후보자의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추천서 1부를 첨부해 등록한다.
 3. 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추천서에는 선거권자 1인이 후보자 1인 이상을 추천하지 못하며, 2학년의 경우 60명이상(동학년 30명이상, 그 외 학년 30명이상), 1학년의 경우 50명 이상(동학년 30명이상, 그 외 학년 20명이상) 학생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급 교과담당 교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선거권자 1인이 후보자 1인 이상을 추천한 경우 추천을 무효화하고 그 추천서를 반송하며, 선거권자 1인이 동일 후보자에게 2회 이상 추천한 경우 추천도 모두 무효화하고 그 추천서를 반송한다. 단,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수정된 추천서를 받는다.)
 4.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받는다.
 5.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공고해야 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명단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이때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순으로 한다.

제8조【후보자 자격】본회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자
2. 학생자치회장은 3학년 진학예정자, 부회장은 2학년 진학예정자로 한다.
 - 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 ②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③ 임원은 **선출 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은 내력이 있는 경우라도 개선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안전생활부의 심의를 받아 등록한다.(단, **선출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은 학생의 경우 그 자격은 박탈되며, 박탈된 경우 2주일 이내 새 임원을 선출한다. 박탈된 임원의 임기기간은 인정한다.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부회장이 회장 임무를 대신한다.)

제9조【선거운동】

1. 선거 운동 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 직후부터 선거 전일까지 한다.
2. 선거운동에 사용할 홍보물 원고는 후보자가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전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공약, 선거 구호 등을 게재 할 수 있다.
4. 벽보의 용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5. 벽보의 관리는 기호 순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만 부착할 수 있다.
6. 벽보의 규격은 4절지로 한다.
7. 5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8.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선거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① 선거권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음식물 또는 선물 제공,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 ② 다른 후보비방 및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 ③ 규정 외의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9. 후보자 토론에 관련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투표】

- 1.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시작 1시간 전까지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좌석, 선거인 명부의 대조, 투표용지의 교부와 기표, 투표함의 설치, 참관인의 참관 등에 필요한 장소를 각각 설비하여야 한다.
- 3. 투표에 관한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 4.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기호 순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 5. 투표소에는 각 후보당 1인씩의 투표 참관인을 둘 수 있다.
- 6. 투표용지 교부는 선거관리 위원이 담당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 7. 전자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전자투표시 투표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개표】

- 1. 개표소는 일정한 교실에서 행한다.
- 2. 개표 담당 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이 하되, 투표시의 참관인은 개표소의 참관인이 될 수 있다.
- 3.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 임석 하에 선거관리위원과 개표위원이 하며, 집계는 별도 지명된 선거관리위원이 실시한다.
- 4. 득표수의 공표는 개표가 완료된 후 1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판에 공고한다. 이때는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 기권표수를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 5. 다음 항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②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 ③ 어느 난에도 투표하지 아니한 것
 - ④ 두 명 이상 후보에게 기표한 경우
 - ⑤ 경계선에 기표한 경우
 - ⑥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제12조【당선인 결정】

- 1.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2. 제 1항의 개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교대의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3.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을 공고하고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선거】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① 등록된 후보자가 없을 때
- ②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의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 ③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④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당선 무효된 때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14조 【보궐선거】

- 1.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없게 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선거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2. 학교장이 제1항의 보궐선거의 실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15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1.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당선인공고 후 10일 이내에 교직원회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교직원회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선무효】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한 것이 확인된 경우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학교장은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당선인의 당선무효를 결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칙】

- 1. 선거관리 자문교사는 선거권자들에게 선거절차.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록, 선거록 및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관리 자문교사에게 제출하고, 자문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4장. 인권친화적 회복적(단계별) 학생 생활교육

1. 경기도교육청 학교이권지원과-7498(2013.7.23.)관련 함현중학교-9182(2014.9.1.)에 의하여 학생생활 평점제(상,별점) 내용을 삭제 하므로서 대체방안인 인권 친화적 회복적(단계별) 학생 생활교육프로그램을 2015,03,01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운영 한다.

1 인권 친화적 회복적(단계별) 학생 생활교육

□ 취지

- 인권 친화적 회복적(단계별) 학생 생활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받는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이 있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개념

- 체벌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규정과 약속이 지켜지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회복적(단계별)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목적

-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고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
- 학생 사안 예방 및 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 정착

□ 운영방법

- [3단계 인권 친화적 회복적(단계별) 학생 생활교육]
 - 1단계 : 약속단계(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생활 실천 약속)
 - 2단계 : 약속준수단계(회복적 생활교육, 비폭력대화, 자치활동 활성화 등)
 - 3단계 : 학교생활교육단계(교육적 학교생활교육 조치)
- (인권존중) 학생 의사에 반하는 지도방법 지양(지나친 용의 복장 규제 등)
- (상호존중)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단계별 회복적 학생 생활교육에 따른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규정과 약속이 지켜지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적용으로 책임감 고취

회복적(단계별)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

1단계 약속단계

- 학생 교사 간 관계개선
- 같이 만들어가는 생활실천 약속
- 담임교사 중심 학교인권교육 책임제 운영



- 생활교육에 학생 참여
- 학교별 특색이 있고 실천 가능한 생활약속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2단계 약속준수단계

- 학교생활 약속 준수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노력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문자서비스 활용
- 비폭력 대화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회복적 학생 생활교육
- 학생자치회 중심 약속준수 캠페인 전개



3단계 학교생활교육단계 (교육적 학교생활교육 조치)

- 인권이 존중되는 단계적 학생 학교생활교육 조치
- 교육적 방법으로 최후까지 학교생활교육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 학교생활교육 적용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 학교생활교육 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

영역	연번	프로그램명	내용
성찰 중심 활동	1	글 쓰면서 되돌아보기	편지쓰기, 자기행동이행계획서, 에세이, 마음일기쓰기
	2	잠시 마음 다스리기	전체 떠들 때, 장난 심할 때, 감정 자제 필요 시
	3	침묵 수행하기	명언집 읽기, 침묵 산책하기, 행동 되돌아보기 등
	4	교사와 부모가 함께 걷기	함께 걷기, 생각하고 대화하기, 글쓰기
과제 중심 활동	5	암송하며 생각하기	시 쓰기, 느낀 점 쓰기
	6	독후감 쓰기	줄거리 쓰기, 갈등 상황 대처하기, 느낀 점 쓰기
	7	감상문 쓰기	동영상 감상문 쓰기, 감사 편지 쓰기
	8	자기 주도 학습하기	자기 주도 학습 준비, 계획서 세우기
	9	규칙과 권리 생각하기	규칙은 꼭 지켜야 하나요?, 서로의 권리 존중하기
	10	브레인 스토밍/브레인 라이팅	신체 기관과 인권 연결하기, 인권 밥상 차리기
참여 중심 활동	11	교육활동 도우미	교사 업무 도우미 활동하기
	12	웰빙 도우미 활동	봉사활동 하고 웰빙 도우미 일지 작성하기
	13	캠페인 활동	캠페인 활동 계획서 작성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14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 활동	지역사회 참여 활동, 복지 시설과 연계 한 나눔과 참여
상담 중심 활동	15	상담 프로그램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교장(감) 면담, 학부모 내교 면담
	16	Wee 센터 활용하기	이용 방법, 활동 내용
	17	미술 치료 프로그램	진단, 신뢰감 형성, 감정다루기, 현재의 나 알기, 관계 속의 나 알기,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18	연극 치료 프로그램	Role-play, 또래상담, 심리극, 즉흥극, 상황극, 극 만들기
	19	음악 치료 프로그램	심신 치료 음악듣기 프로그램(아침방송, 쉬는시간, 점심시간, 귀가시간)
	20	부모 일터 체험하기	부모 이해, 내 모습 알기, 부모와 대화, 부모 일터 체험하고 느낀 점 쓰기
	21	사제동행하기	몸으로, 함께하기, 마음으로 함께하기, 여럿이 함께하기
규정 약속	22	학생 자치법정	학생 자치법정의 조직, 운영

◇ 회복적 학교생활교육 프로그램 항목

구분	항목	내 용	단계		
			약속	약속준수	학교생활교육
출결	1	무단 지각(수업 시작 후).조퇴.결과.외출	○	○	
	2	무단 결석	○	○	○
	3	등교시간 이후 09:00-09:10	○	○	
용의	4	교복 미착용 및 교복 착용 상태 불량한 경우	○	○	
	5	화장, 염색.피머 등 두발 관련 학교생활규정 위배한 경우	○	○	○
예절 및 태도	6	청소 및 기본 의무 태만	○	○	
	7	이성간 풍기 문란 행위(가벼운 신체접촉)	○	○	○
	8	학생 신분 및 품위에 맞지 않는 저속한 언행(욕설)	○	○	○
수업	9	수업 중 취침 또는 그 외 면학분위기를 저해한 경우	○	○	○
	10	준비물 미지참, 과제 미이행 등 수업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의 경우	○	○	
	11	정당한 사유없이 수업 타종 후 미입실한 경우	○	○	
	12	수업과 무관한 책보기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	
준법	13	다른 반 교실 무단 출입	○	○	
	14	실내외화 미 구분 착용(신발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	○	○	
	15	교내외 낙서 행위	○	○	
	16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및 침을 함부로 뱉는 행위	○	○	
	17	학생증 미소지자 → 명찰 미착용	○	○	
	18	월담 및 그와 유사한 행위 → 무단외출 추가	○	○	
	19	괴성, 질주, 공놀이 등 실내(교무실 포함)에서의 소란 행위	○	○	
	20	도박, 사행성 오락기구의 교내 소지 및 사용 행위	○	○	○
	21	수돗물, 전기 등의 낭비 및 장난	○	○	
	22	학교 컴퓨터 및 기자재의 교육용 목적 외의 사용	○	○	
기타	23	급식 질서 미 준수 및 급식소 내부 물품의 외부 유출	○	○	○
	24	장기간 도서 연체 (10일 이상, 이후 10일마다 지도점 추가)→삭제	○	○	
행사	25	단체 활동 및 교내외 행사, 학급 활동, 조종례 등 무단 불참	○	○	
	26	조, 종례 및 청소 등 학급활동 무단 불참	○	○	
	27	학급자치활동에 신중함이 없는 언행 등으로 불성실한 참여를 한 경우	○	○	
	28	학생용 화장실 이외 화장실을 사용한 학생 및 화장지를 무절제하게 사용한 경우	○	○	
통신	29	수업 및 자기주도학습시간에 휴대폰 및 영상기기 소지 및 사용 금지	○	○	
징계	30	위의 사항보다 심각한 위반 행위는 학교생활교육 처분에 해당됨	학교생활 생활교육규정		

(학교보관용)

	담 당	부 장	교 감
결재			

회복적 학생 생활 프로그램 알림장

()학년 ()반 이름 :

위 학생은 회복적 학생 생활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 조 (교칙 위반 항목별 학생지도단계)에 의거 ()회 이상 구두로 학생을 지도하였으나, 선생님과 약속은 물론 학생으로서의 품행의 변화가 없어 훈계 처분함과 동시에 다시 문제 행동이 발생할 경우 교칙 위반 항목별 학생지도단계 및 교내상담 (학교생활 교육단계)로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확인 : (인)

학부모 확인 : (인)

2021년 월 일

함 현 중 학 교 장

제5장 학교생활교육

제1절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함현중학교 학교생활교육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학생의 징계)와 <교육법 제77조(학생생활교육)와 중·고등학교 학칙 준칙 제27조(학생생활교육), 학칙 제28조에 의거 학생의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학생생활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생생활교육원칙】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선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18조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생활교육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3. 학교생활교육 규정에 의거 처리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학생생활교육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생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5. 생활교육 처분은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학생생활교육 위주로 처리한다.
6. 학생생활교육은 담임교사의 책임지도로 전제로 하고 학생생활교육에 있어서 담임교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7.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 대상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8.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구성】 학교생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3.7.29.> <개정 2020.6.24.>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위원은 각 학년부장, 학생인권부장 및 학생생활지도 경력교사를 위촉하여 5~8명으로 구성하며, 학생생활교육 사항을 심의 한다.
4. 간 사 :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회의록 담당 교사

제5조【기능】 이 위원회는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사안 발생 시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고, 특히 학생의 임신, 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전학 등의 징계를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회의 소집 및 의결】 본 위원회는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

제7조【사안설명】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의 진술서, 학생사안 경위서, 담임 의견서 등을 제출 받아 참고하며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8조【학교장의 재심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기록 및 사무처리】 해당 학생생활교육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학생생활교육 담당 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생생활교육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3절 징계

제10조【종류】 : 학생생활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 학교 내의 봉사는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학교 실정에 따라 총시간 등으로 정하여 달리 실시할 수 있다.
2. 사회봉사 : 사회봉사는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 또는 교내에서 봉사를 해야 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특별교육 이수 : 특별교육 이수는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교육청에서 지정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이나 기타 교육기관에 참가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에서 부과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한다.

제11조【학생생활교육 처리 학생 관리】 : 대상 학생을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생생활교육 처분의 의결 사항을 각 학년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는 학생 인권부 협조를 득한 후 결재를 학생생활교육의 종류에 의거 대상 학생을 다음과 같이 교육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 ① 학생 생활교육 위원회에서 협의하며, 학생봉사활동 계획과 시기는 학생안전생활부와 인성상담부, 학년부의 협의를 거쳐 학년생활지도 담당교사가 기안 및 결재 후 지도한다.
- ② 학교 내 봉사는 학생의 누적된 생활태도의 조속한 교정을 위하여 학교에 등교시켜 학교 봉사와 실천 및 과제 학습을 시키는 조치이며, 기간은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③ 출결과 이행여부는 학년부장이 관리하고, 학생관리는 담임교사와 학년부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하며, 전문상담이 필요시에는 진로상담부와 학생안전생활부가 지원한다.

2. 사회 봉사

- ① 학생 생활교육 위원회에서 협의 후 봉사활동 계획과 시기는 학생안전생활부와 학년부의 협의를 거쳐 각 해당학년 학생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기안 및 결재를 한다.
- ② 사회 봉사활동 태도상 문제가 다소 누적된 학생, 문제의 심도가 약간 깊은 학생으로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로 및 과제 학습을 시키는 조치이며 기간은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로 한다. 대상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조회와 종례를 받는다.
- ③ 출결과 이행여부는 학년부장이 관리하고, 학생관리는 담임교사와 학년부에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하며, 전문상담이 필요시에는 진로상담부와 학생안전생활부가 지원한다.
- ④ 사회봉사 기관의 선정은 학년부에서 학부모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학생안전생활부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문서일체를 취합 관리한다.
- ⑤ 사회봉사 후 봉사활동확인서와 소감문을 작성하여 학생안전생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그 정도의 누적도에 따라 학교 내 봉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다.

3. 특별교육 이수

- ① 학생 생활교육 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봉사활동 계획과 시기는 학생안전생활부와 학년부의 협의를 거쳐 각 학년 생활지도계에서 기안 및 결재를 한다.
- ② 특별교육 이수는 생활 태도상 문제가 장기화 및 습관화되었거나 또는 문제의 심도가 깊은 학생으로서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심하여 금연학교, 의료기관 및 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시키는 조치로서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특별 교육 기관의 교육이나 상담 치료 개별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특별교육 이수 기관 참조>
 - 금연학교나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 교육 기관에 위탁 교육
 -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 치

료 교육, 전문 기관 또는 의료 교육 기관의 치료 교육 등이 있음.

- ④ 특별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이수증을 해당학년 생활지도교사에게 제출하고 이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⑤ 출결과 이행 여부는 해당 학년 생활지도계에서 관리하고, 학생 관리는 담임교사와 학년부에서, 전문상담이 필요시에는 진로상담부와 학생안전생활부가 지원한다.
- ⑥ 그 정도의 누적도에 따라 학교내 봉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다.

4. 출석정지

- ① 학생 학생생활교육 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출석정지 계획과 시기는 학생안전생활부와 학년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학년 생활지도계에서 기안 및 결재를 한다.
- ②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③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 ④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한다.

5. 제 10조에 해당하는 생활교육 처분 사실은 학생 학생생활교육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추수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6. 제 2항과 제 3항의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는 생활교육 처분에 의한 봉사활동이므로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7. 공휴일 및 고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그 기간만큼 순연된다.

제12조 【적용기준】 : 학생생활교육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내 봉사 :

- ① 수업 중 학습 분위기를 고의로 흐리게 한 학생
- ②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③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④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⑤ 절도, 흡연 또는 음주, 타의 지탄을 받을 만한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대외적으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 ⑥ 도박을 한 학생
- ⑦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⑧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 ⑨ 학교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⑩ 일과 시간 중 교내를 무단이탈한 학생
- ⑪ 인터넷에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학생
- ⑫ 외설물(음화, 음란 비디오, 음란 디스켓(컴퓨터), 불량 서적)을 소지한 학생
- 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⑭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고의로 위반했거나 반대한 학생
- ⑮ 4일 이상의 연속적인 무단결석 학생(산발적 무단결석의 합계가 5일 이상인 학생)

- ⑯ 3일 이상 무단가출 학생
- ⑰ 불법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한 학생
- ⑱ 불법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홍보한 학생
- ⑲ 사이버머니나 아이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에 가담한 학생이나 남의 ID를 도용한 학생
- ⑳ 학생 신분에서 어긋난 소지품을 소지한 학생
- ㉑ 선·후배 동료 간에 심하게 욕설을 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한 학생
- ㉒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㉓ 그 외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당히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2. 사회 봉사 :

- ①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를 선동한 학생
- ② 교사에게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학생
- ③ 8일 이상의 연속적인 무단결석을 한 학생(산발적인 무단결석의 합계가 15일 이상인 학생)
- ④ 7일 이상의 무단가출 학생
- ⑤ 수업을 거부한 학생
- ⑥ 시험을 거부한 학생
- ⑦ 재학 중 문신 또는 자해 행위를 한 학생 또는 흉기를 소지한 학생
- ⑧ 불법집회 또는 불량 씨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 ⑨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된 학생
- ⑩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⑪ 일방적인 성희롱이나 스토킹을 한 학생
- ⑫ 학교장의 허락 없이 외부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학생
- ⑬ 학교장의 허락 없이 단체나 서클을 조직, 활동하거나 권유한 학생
- ⑭ 상습적으로 절도, 흡연 또는 음주, 타의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학생
- ⑮ 대외적으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 ⑯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를 제작·배포하거나 각종 개인정보를 위조 및 도용한 학생
- ⑰ 타인의 ID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거나 해킹을 했을 경우
- ⑱ 불법 사이트 가입 및 특정 사이트에 극심한 운영에 불편을 주는 행위
- ⑲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⑳ 그 외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당히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3. 특별교육 이수 :

- ① 형법상 유죄로 판결을 받은 자 또는 법에 저촉되어 지역 및 학교에 학생생활교육 위임된 학생
- ② 15일 이상의 연속적인 무단결석을 한 학생(산발적 무단결석은 합계 20일 이상까지)

- ③ 12일 이상 무단가출한 학생
- ④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으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학생
- ⑤ 단체 행동, 수업 거부 및 고사기피 선동자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학생
- ⑥ 범법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⑦ 공공시설물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 ⑧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⑨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음란물을 유통한 학생
- ⑩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⑪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⑫ 그 외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당히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4. 출석정지 :

특별교육 이수 후에도 개전의 의지가 없고, 심각한 교칙 위반행위를 한 학생

제13조 【심의 확정】

1. 학생생활교육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교사의 진상 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학생생활교육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2. 학교장의 결재일로부터 집행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생활교육내용 통보】 : 생활교육 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학생생활교육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단, 3회 이상 보호자에게 통고하여도 내교하지 않을 때에는 교칙에 의거 처리한다.

제15조 【생활교육 학생 고사 응시】 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6조 【생활교육의 경감】

-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생안전생활부장 및 담임교사, 학년부장, 진로상담부장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생활교육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의 단축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안전생활부장이 진로상담부장 및 담임교사, 학년부장과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제17조 【생활교육 지도 방법】 생활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학급 담임은 그 학생에 대하여 학생생활교육 기간 중 매일 반성일지와 학년생활지도계가 부과하는 과제를 이행해야 하며 담임, 생활지도 담당교사, 학년부장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1회 이상 학부모와 면담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지도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처분 결과에 따른 학생 상담은 전문상담교사가 실시하며, 상담 실시 후 결과는 생활지도 담당교사와 협의한다.
- ③ 생활교육 기간이 지나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생활교육의 해제는 학생안전생활부장, 진로상담부장,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학

급 담임의 합의로 해당 학년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한다.

- ⑤ 사회봉사와 특별 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보호자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케 하고 제출된 서약서는 해당 학년부에서 관리한다.

제18조 【생활교육 해제】 생활교육 해제 학생은 학교생활교육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해당 학년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사후 지도】 담임교사와 상담 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20조 【이의제기】 생활교육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재심청구】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불이행】

학생생활교육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조치를 불이행할시 학생생활교육 위원회를 다시 개최, 심의하여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제 4절 규정의 개정

제23조 【규정의 개정】 : 본 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24조 【기타 규정】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은 학생 생활교육 위원회에서 정한다.
4.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7498(2013.7.23.) 학교단위 학생 생활교육 위원회 운영 지침 알림에 의거 2013년 7월 29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제2절 제4조 중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을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으로 한다.

9.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1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규정은 2022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자기변론서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 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__년 __월 __일 __시경 ② __개월 간 __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_____) 학교 밖 (_____)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① 같은 반 친구 (_____) ② 다른 반 친구 (_____) ③ 기 타 (_____)				
4	사안이 발생한 당시 일어난 일(대화 내용, 행동)을 빠짐없이 쓰세요!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	작성일	20__년 __월 __일	작성 학생		(서명)	

참고인 확인서(목격자 등)

1. 본 확인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목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사안 담당 교사들만 확인합니다.
3. 목격자의 확인 내용은 공정한 사안 해결과 해당 학생의 교육을 위해 매우 소중한 자료이므로 성심성의껏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__년 __월 __일 __시경 ② __개월 간 __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_____) 학교 밖 (_____)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4	기타 (사안에 대하여 들은 소문, 관련내용 등)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	작성일	20__년 __월 __일		작성 학생	(서명)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제목						
사안발생일시						
사안발생장소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적용 가능한 학교생활 인권규정						
작성일	20__년 __월 __일		작성 교사		(서명)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3. 사실 확인서(교사용) 1부.

학생생활교육 대장

함현중학교

구 분	년월일	반/번호/이름	학생생활교육 구 분	학생생활교육 처분 내용	결 재		
					담임	부장	교감
내 용							
	확인	예시 : (교내봉사 또는 사회봉사(특별교육)을 잘 이수하고 행동이 변화됨)					
내 용							
	지 도						
내 용							
	지 도						
내 용							
	지 도						
내 용							
	지 도						
내 용							
	지 도						
내 용							
	지 도						

학생생활교육 처분 통보서

결 재	학년부장	교감	교장

()학년 ()반 ()번 성명 : ()

위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조(학생생활교육)제○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학교생활교육 규정 :

- 학생생활교육 조치 i) 교내봉사 ○○시간(20 년 월 일 ~ 월 일)
- ii) 반성일지 작성(자유 서술식, 수필, 에세이 형식)
- iii) 과제 : 독후감(명언 명구 필사, 동영상 시청 등)
- iv) 전문상담 : ○○시간(20 년 월 일 ~ 월 일)

20 년 월 일

함현중학교장

----- 절 ----- 취 ----- 선 -----

학생생활교육 처분 통보서

()학년 ()반 ()번 성명 : ()

위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조(학생생활교육)제○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학교생활교육 규정 :

- 학생생활교육 조치 i) 교내봉사 ○○시간(20 년 월 일 ~ 월 일)
- ii) 반성일지 작성(자유 서술식, 수필, 에세이 형식)
- iii) 과제 : 독후감(명언 명구 필사, 동영상 시청 등)
- iv) 전문상담 : ○○시간(20 년 월 일 ~ 월 일)

20 년 월 일

함현중학교장

※ 본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학생생활교육 처분 재심의 신청서

청 구 인	성명		연락처	주택) 휴대전화)	관계	본 인 () 보호자 ()
	주소	□□□-□□□□			[보호자의 관계]	
	학생	성 명		소 속	()학교 ()학년 ()반	
학생생활교육 조치 일자	년 월 일		학생생활교육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이의 신청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이의 신청 이유						
20 년 월 일						
(이의 신청 청구인) :		(인)				
함현중학교장 귀하						

제 6장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1.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3.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 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자치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6.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8.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9.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10.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개정안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② 재직 교원의 과반수
 -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④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의 의결서 첨부)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9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7장 장애학생인권

제1조 【목적】 학교는 장애학생을 인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 보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2조 【근거】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 1장, 제 1조에서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2. 제 2장, 제 32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괴롭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3. 이를 어길시 제 6장, 제 49조에서는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3조 【차별행위】

1.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②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 ⑤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 ⑥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⑦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성폭력)을 가하는 경우
2.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①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제4조 【차별판단】

1.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본다.
2.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5조 【교육】

1.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 학생이 당해 교육 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제59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실무사, 장애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괴롭힘 등의 금지】

1.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 또는 장애학생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